

연구교수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연구교수라 함은 본교가 필요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) 연구교수는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.

제4조(임용절차 및 기간) ①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.
(개정 2015.06.16.)

1. 각 대학장 또는 부설연구기관장의 추천(신설 2015.06.16.)
2. 산학협력단장의 연구과제 확인(신설 2015.06.16.)
3. 총장의 제청(신설 2015.06.16.)
4. 이사장이 임용(신설 2015.06.16.)

②임용기간은 1년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계속 수혜받는 기간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처우) ①연구교수의 보수는 연구비로 충당한다.

②연구교수는 필요한 경우 주당 6시간(2강좌) 범위 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제6조(임무) ①연구교수는 소속 대학 및 부설연구기관에 상근하여 연구에 임해야 한다.

②연구교수는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

③연구교수는 겸직 및 타대학 출강을 할 수 없다. 다만, 타대학 출강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.(개정 06.1.26)

④연구교수의 연구성과물 및 특허에 대한 권리는 소속 대학 또는 부설연구기관에 귀속시킨다.

제7조(임용서류) 연구교수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소속 대학장 및 부설연구기관장의 추천서
2. 이력서 1통

3-2-13~2 제3편 행정

3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통
4. 경력증명서 각 1통
5. 주민등록등본 1통

제8조(임용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연구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